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3호 2018. 9. 21.(금요일)

조 례

| | | |
|-----------------|---------------------------------------|----|
| ○ 하동군 조례 제2296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 ○ 하동군 조례 제2297호 |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 ○ 하동군 조례 제2298호 |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 ○ 하동군 조례 제2299호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 |
| ○ 하동군 조례 제2300호 |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5 |
| ○ 하동군 조례 제2301호 |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 ○ 하동군 조례 제2302호 |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규 칙

| | | |
|-----------------|---------------------------------|----|
| ○ 하동군 규칙 제1189호 |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 52 |
|-----------------|---------------------------------|----|

고 시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8-147호 | 하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53 |
| ○ 하동군 고시 제2018-148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범왕마을호). | 59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0호 | 매계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 60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1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고시공고. | 61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2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경상남도산림연구원). | 62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5호 | 하천점용 허가 | 63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6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 | 65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7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류**). | 66 |
| ○ 하동군 고시 제2018-15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67 |

입 법 예 고

| | | |
|----------------------|--------------------------------------|----|
| ○ 하동군 공고 제 2018-970호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9 |
| ○ 하동군 공고 제 2018-974호 |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4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공 고

| | | |
|---------------------|--------------------------------------|-----|
| ○ 하동군 공고 제2018-922호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재공고)..... | 85 |
| ○ 하동군 공고 제2018-942호 | 지방일반임기제 8급상당(속기분야)최종합격자 공고..... | 97 |
| ○ 하동군 공고 제2018-943호 | 2018년도 하동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공고(2차)..... | 99 |
| ○ 하동군 공고 제2018-949호 | 하동군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고..... | 107 |
| ○ 하동군 공고 제2018-955호 | 지적재조사 상신흥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 112 |
| ○ 하동군 공고 제2018-956호 | 지적재조사 청수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 114 |
| ○ 하동군 공고 제2018-977호 | 식품가공분야 일반임기제(8급상당)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116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96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호 중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을 “매표소, 관리사무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화요일”을 “일요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별표 2”의 이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를 “대
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액 | |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 80% | |
|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 80% | |
|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 80% | |
|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8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 5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 50%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 |
|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 50% |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 50% | |
|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80% 또는 50% |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
|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 10% | |
|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 20% | |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운영 시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p> <p>1. (생략)</p> <p>2. 부대시설 : <u>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등</u></p> | <p>제3조(운영 시설)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매표소, 관리사무실</u> -----</p> |
| <p>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② (생략)</p> <p>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매 주 <u>화요일</u></p> <p>2. (생략)</p> | <p>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u>일요일</u></p> <p>2.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u></p> <p>2. <u>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u></p> <p>3.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③ (생략)</p> |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u>별표 2</u>”의 이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u>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제13조(손해배상) ① (생 략)

② 이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액 | |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 전액 | |
|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 전액 | |
|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 전액 | |
| (신 설)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 50%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 50%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 |
|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 50% | |
|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 50% | |
|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액 또는 50% |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
|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 10% | |
|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 20% | |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현행과 같음) | | |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 80% | |
|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 80% | |
|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 80% | |
|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80% | |
| (현행과 같음) | | |
|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80% 또는 50% | |
|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 | |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97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u></p> <p>2. <u>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생 략)</p> |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반환하지 아니한다.</p> |
| <p>제16조(손해배상) ① (생 략)</p> <p>② <u>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u></p> | <p>제16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p>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98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특별회계”를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중 “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를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 <p>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p> |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용자금
-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용자금
- 3. 지방양여금
- 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용자금
- 5. 도 보조금
- 6.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7.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8.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 9. 분뇨처리수수료
- 10. 차입금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 2. 오염물질 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드는 비용
- 3. 오염 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드는 비용
- 5.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 6.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드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10.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

보에 드는 비용

12. 수원함양 기능증진을 위한 산

림사업에 드는 비용

13.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드

는 비용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

요한 경비

15.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하수

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
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
한다.

<신 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9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5인 이상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하동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 ②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 ④ “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

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⑤ “건축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 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중 수탁자 스스로 원하거나,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5.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 7. 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8.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9.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업무
-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 지원
- 11.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2.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진행
- 13.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 14.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 1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상근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코디네이터 등 소요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사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센터와 해당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등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2.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5.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7.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

-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백서의 작성
-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하동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1. 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건축코디네이터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건축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 ② 건축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건축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대상지 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설계, 착공, 시공 등 컨설팅 업무
 - 2.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 개량방안 상담 지원
 - 3.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 4. 단독 및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 5. 그 밖에 군수가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시행 및 관리)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①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군에 무상 귀속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군에 무상 귀속된다.

제12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

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하여 제외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군 의회 의원

3.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

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 활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제17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20조(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크,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3조의2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제13조의3에 따른 건축코디네이터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비
5. 법 제2조제7호 및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시 공공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시행자 지정 해지 및 지원 금액의 환수)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 3.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 4.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5.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7.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8.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하동군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2.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3.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 4.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 5.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7.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
- 9.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 10.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 11.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 12.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13. 도시재생사업 시행 위탁 시 위탁 수수료
- 1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 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하동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르되,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00 호

하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KT []SKT []LGU+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 | 유선전화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
|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 | | 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3. 피해내용

| | | | |
|---------|--|--|--|
| 피해발생 일시 | | | |
| 피해발생 장소 | | | |

| | | | | |
|-------|----|---|--|--|
| 인명 피해 | 신고 |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 | |
| | 확정 |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 | |

| | | | | | |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
| | 총면적(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
| | 면허·허가·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
|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 |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
|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
| 유자신청 여부 | [] | | [] | | [] | |

4. 확인사항

| | | |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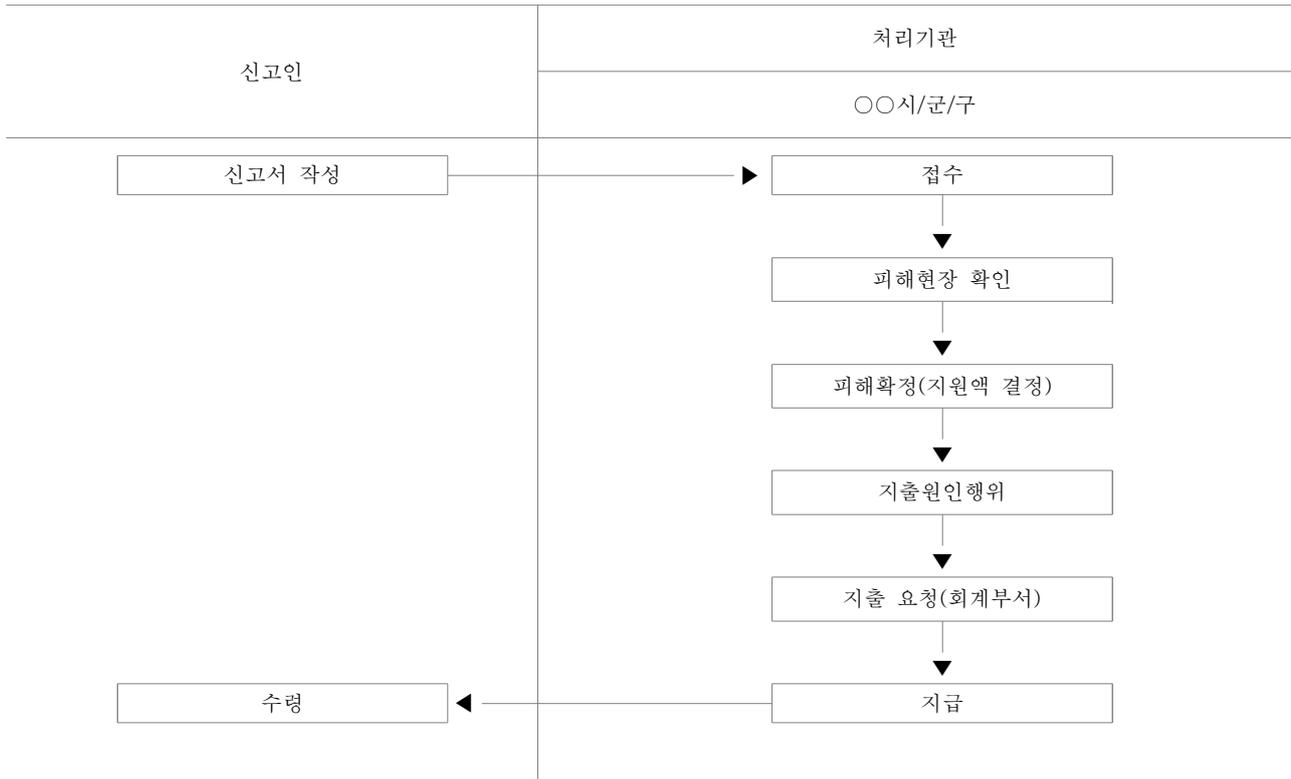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과/반과/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01 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1
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15조”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하동군”으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
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군”
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
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제5호 중 “정신보건교육”을 “정신건강증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정신질환자·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5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정신보건사업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전문의를”를 “정신건강증진사업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12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보건사업담당자”를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로,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8조 제목 “(정신보건사업의 위탁)”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19조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동군 <u>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u>를 설치하</p> | <p><u>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 <u>하동군</u>----- ----- <u>정신건강복지센터</u>의 설치 및 -----</p> |

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신보건센터는 군 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

-----.

제2조(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 센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제5조(인력) ① 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관련

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3. (생략)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

② 센터-----

-. ----- 센터-----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

제6조(사업내용) 센터-----
-----.

1. ----- 정신건강관련

2. 3. (현행과 같음)

4.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 ----- 정신건강증진교육 --

6. ----- 정신질환자·가족

7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

범위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2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센터-----
-----.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센터-----

제10조(이용제한) -----
----- 센터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센터-----
----- 센터 -----
센터 -----
-----.

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9조(위탁기간) 제1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3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5. (생략)

제2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

-----.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19조(위탁기간) -----
----- 5년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센터-----

1. ~ 3. (현행과 같음)

4. ----- 센터

5.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 및 감독) ① -----
----- 센터-----

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

- 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제25조(준용) -----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02 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군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으로서”를 “농어업인, 영농(어)조합(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로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어업인(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

제8조제3호의 “축산기반”을 “농어업기반”으로, “친환경축산사업”을 “친환경 농어업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을 “농작(수산)물”로,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을 “육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농어업시설물의 적법화(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
- 12. 농어업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 13. 농어업인 단체 및 농촌생활자원 육성 지원사업
- 14.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 15. 농수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 16.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 17.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 1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 19. 안전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 20.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보전 지원사업
- 21.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 22.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 23. 농어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 24. 지구 온난화 대비에 따른 새로운 작목 육성 지원사업
- 25. 농수산물 물류비 및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사업
- 26. 농수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업
- 27. 친환경 과학 영농(어업) 안전 농수산물 생산, 관리를 위한 검정 분석업무 지원사업
- 28.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29.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 30. 공공비축미곡 안전보관 및 수매 기반 구축 지원사업
- 31. 농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 32. 식물방제, 가축 방역에 필요한 자재 비용 등의 지원사업
- 33. 농어업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이자(융자) 지원사업
- 34.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 35.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 36.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 37. 농어업 기술습득, 농수산물 가공품 개발 등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소요 경비

제11조제3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농어촌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8. 농어촌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9.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 10.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대회)를 농어업인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단 중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를 준용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 제1조(목적) ----- ----- ----- |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 6.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 하동군 -----

 -----.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

-----.

제7조(지원 범위) -----

----- 농어업인, 영농(어)조합(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로서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

-----.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생략)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 8. (생략)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생략)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

3. ~ 7. (생략)

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10. (생략)

<신설>

-----.

1. 농어업인(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

2. (현행과 같음)

3

----- 농어업기반
----- 친환경 농어업사업--

4. ~ 8. (현행과 같음)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농작(수산물) -----
----- 육묘사업

3. ~ 7. (현행과 같음)

8.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10. (현행과 같음)

11.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농어업시설물의 적법화(양성화)에 소

<신 설>

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

12. 농어업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 설>

13. 농어업인 단체 및 농촌생활자원 육성 지원사업

<신 설>

14.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신 설>

15. 농수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 설>

16.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 설>

17.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신 설>

1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신 설>

19. 안전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신 설>

20.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보전 지원사업

<신 설>

21.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 설>

22.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신 설>

23. 농어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신 설>

24. 지구 온난화 대비에 따른 새로운 작목 육성 지원사업

<신 설>

25. 농수산 물류비 및 수출실적

<신 설>

보상금 지원사업

26. 농수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업

<신 설>

27. 친환경 과학 영농(어업) 안전 농수산물 생산, 관리를 위한 검정 분석업무 지원사업

<신 설>

28.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신 설>

29.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 설>

30. 공공비축미곡 안전보관 및 수매 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 설>

31. 농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신 설>

32. 식물방제, 가축 방역에 필요한 자재 비용 등의 지원사업

<신 설>

33. 농어업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이자(융자) 지원사업

<신 설>

34.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신 설>

35.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신 설>

36.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신 설>

37. 농어업 기술습득,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소요 경비

38.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생 략)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② (생 략)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

③ -----

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 (생략)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어촌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8. 농어촌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9.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10.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대회)를 농어업인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정책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제17조(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89 호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147호

하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하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31일

하 동 군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하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나.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285-11 ~ 북천면 직전리 450-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축제정비 L=2,804m (호안공 A=21,594㎡), 교량 4개소,
보 5개소, 어도 5개소, 배수암거 2개소, 배수통관 7개소
- 라.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21년 10월
- 마.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8년 09월 01일 ~ 09월 15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8년 10월 이후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기 타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토지조서

하동구하천재해방사업
 하동구하천재해방사업
 하동구하천재해방사업
 하동구하천재해방사업

| 일련번호 | 소재지 | | | 지번 | 지목 | 지적(㎡) | | 공유지분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
| | 군 | 면 | 리 | | | 현공부 | 편입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2 | 하동 | 북천 | 방화 | 530-6 | 구 | 544.0 | 68.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6 | 하동 | 북천 | 사평 | 450-15 | 답 | 201.0 | 12.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7 | 하동 | 북천 | 사평 | 1062 | 도 | 607.0 | 38.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8 | 하동 | 북천 | 사평 | 1086 | 천 | 13,847.0 | 11,279.0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1 | 하동 | 북천 | 사평 | 1067 | 구 | 566.0 | 70.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3 | 하동 | 북천 | 사평 | 1068 | 도 | 549.0 | 86.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4 | 하동 | 북천 | 사평 | 1069 | 구 | 3,923.0 | 268.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8 | 하동 | 북천 | 사평 | 459-4 | 답 | 134.0 | 52.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9 | 하동 | 북천 | 사평 | 1065 | 도 | 645.0 | 182.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27 | 하동 | 북천 | 사평 | 454-8 | 답 | 82.0 | 8.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28 | 하동 | 북천 | 사평 | 1073 | 도 | 572.0 | 135.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29 | 하동 | 북천 | 사평 | 455-10 | 답 | 383.0 | 83.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33 | 하동 | 북천 | 사평 | 1080 | 도 | 8,443.0 | 825.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34 | 하동 | 북천 | 사평 | 1071 | 구 | 2,615.0 | 100.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43 | 하동 | 북천 | 사평 | 479-6 | 답 | 163.0 | 29.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44 | 하동 | 북천 | 사평 | 481-3 | 답 | 159.0 | 66.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45 | 하동 | 북천 | 사평 | 1079 | 구 | 2,808.0 | 562.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50 | 하동 | 북천 | 사평 | 455-8 | 답 | 26.0 | 26.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51 | 하동 | 북천 | 사평 | 455-9 | 답 | 135.0 | 135.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53 | 하동 | 북천 | 사평 | 518-1 | 도 | 462.0 | 68.0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54 | 하동 | 북천 | 사평 | 1083 | 구 | 1,997.0 | 57.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59 | 하동 | 북천 | 사평 | 495-2 | 답 | 18.0 | 18.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60 | 하 | 북 | 직 | 401-8 | 답 | 268.0 | 60.0 | | 하동군 | | | | 국유지 |

| | | | | | | | | | | | | | | |
|-----|----|----|----|---------------------|---|----------|----------|--|--|------------|--|--|--|-----|
| 61 | 하동 | 북천 | 직전 | 401-1 | 답 | 1,725.0 | 50.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62 | 하동 | 북천 | 직전 | 1020 | 천 | 83,920.0 | 11,765.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63 | 하동 | 북천 | 직전 | 434-6 | 답 | 1,188.0 | 81.0 | | | 경상남도 | | | | 국유지 |
| 64 | 하동 | 북천 | 직전 | 434-4 | 답 | 265.0 | 265.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65 | 하동 | 북천 | 직전 | 434-7 | 답 | 726.0 | 726.0 | | | 경상남도 | | | | 국유지 |
| 67 | 하동 | 북천 | 직전 | 434-5 | 답 | 129.0 | 129.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69 | 하동 | 북천 | 직전 | 1050-1 | 도 | 256.0 | 191.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70 | 하동 | 북천 | 직전 | 1050 | 구 | 225.0 | 145.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71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0 | 답 | 149.0 | 149.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73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1 | 답 | 243.0 | 243.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75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2 | 답 | 100.0 | 99.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77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3 | 답 | 426.0 | 426.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79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4 | 답 | 87.0 | 87.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81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5 | 답 | 290.0 | 288.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83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6 | 답 | 226.0 | 224.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85 | 하동 | 북천 | 직전 | 435-3 | 답 | 51.0 | 26.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86 | 하동 | 북천 | 직전 | 435-5 | 답 | 282.0 | 89.0 | | | 경상남도 | | | | 국유지 |
| 87 | 하동 | 북천 | 직전 | 1024 | 구 | 3,208.0 | 5.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90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7 | 답 | 475.0 | 475.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92 | 하동 | 북천 | 직전 | 437-18 | 답 | 1,090.0 | 1,085.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94 | 하동 | 북천 | 직전 | 1105-1 | 도 | 141.0 | 122.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95 | 하동 | 북천 | 직전 | 1534 | 도 | 6,390.0 | 1,321.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96 | 하동 | 북천 | 직전 | 1104-2 | 도 | 443.0 | 128.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97 | 하동 | 북천 | 직전 | 1104-1 | 도 | 95.0 | 86.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99 | 하동 | 북천 | 직전 | 447-8 | 답 | 5.0 | 5.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01 | 하동 | 북천 | 직전 | 447-7 | 답 | 20.0 | 20.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04 | 하동 | 북천 | 직전 | 1182-3 | 답 | 86.0 | 86.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07 | 하동 | 북천 | 직전 | 1476-3 ₂ | 구 | 452.0 | 452.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09 | 하동 | 북천 | 직전 | 1184 | 답 | 598.0 | 322.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10 | 하동 | 북천 | 직전 | 1533 | 도 | 1,782.0 | 1,020.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12 | 하 | 북 | 직 | 1087 | 도 | 373.0 | 343.0 | | | 국(국토 | | | | 국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부) | | | | |
| 113 | 하동 | 북천 | 직전 | 1089-1 | 도 | 128.0 | 126.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14 | 하동 | 북천 | 직전 | 1088-1 | 도 | 40.0 | 40.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15 | 하동 | 북천 | 직전 | 1088-2 | 도 | 15.0 | 14.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16 | 하동 | 북천 | 직전 | 1055 | 도 | 301.0 | 17.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17 | 하동 | 북천 | 직전 | 1089-3 | 도 | 72.0 | 23.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20 | 하동 | 북천 | 직전 | 1083-6 | 답 | 370.0 | 3.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21 | 하동 | 북천 | 직전 | 1083-3 | 도 | 225.0 | 17.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25 | 하동 | 북천 | 직전 | 1052 | 도 | 1,132.0 | 63.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26 | 하동 | 북천 | 직전 | 1051 | 구 | 1,570.0 | 75.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29 | 하동 | 북천 | 직전 | 446-5 | 답 | 322.0 | 322.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30 | 하동 | 북천 | 직전 | 1053 | 구 | 158.0 | 13.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31 | 하동 | 북천 | 직전 | 1476-3 ₅ | 구 | 2,314.0 | 104.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35 | 하동 | 북천 | 직전 | 1044-1 | 답 | 50.0 | 48.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36 | 하동 | 북천 | 직전 | 1045 | 답 | 419.0 | 117.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38 | 하동 | 북천 | 직전 | 1045-1 | 답 | 255.0 | 105.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39 | 하동 | 북천 | 직전 | 1046-2 | 답 | 51.0 | 4.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40 | 하동 | 북천 | 직전 | 1054 | 구 | 238.0 | 168.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41 | 하동 | 북천 | 직전 | 1092 | 답 | 1,660.0 | 1,594.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43 | 하동 | 북천 | 직전 | 1476-2 ₉ | 구 | 91.0 | 78.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44 | 하동 | 북천 | 직전 | 1060 | 구 | 2,301.0 | 12.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46 | 하동 | 북천 | 직전 | 1056 | 도 | 814.0 | 367.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48 | 하동 | 북천 | 직전 | 1056-3 | 도 | 24.0 | 24.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49 | 하동 | 북천 | 직전 | 450-3 | 답 | 50.0 | 50.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50 | 하동 | 북천 | 직전 | 450-4 | 답 | 19.0 | 19.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51 | 하동 | 북천 | 직전 | 1060-3 | 구 | 64.0 | 40.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52 | 하동 | 북천 | 직전 | 1060-4 | 구 | 15.0 | 15.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53 | 하동 | 북천 | 직전 | 449 | 답 | 62.0 | 5.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54 | 하동 | 북천 | 직전 | 449-3 | 답 | 70.0 | 67.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55 | 하 | 북 | 직 | 449-2 | 답 | 651.0 | 548.0 | | | 국(국토 | | | | 국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부) | | | | |
| 156 | 하동 | 북천 | 직전 | 449-1 | 답 | 127.0 | 110.0 | | | 하동군 | | | | 국유지 |
| 157 | 하동 | 북천 | 직전 | 1060-5 | 구 | 23.0 | 17.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58 | 하동 | 북천 | 직전 | 1060-2 | 구 | 139.0 | 48.0 |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국유지 |
| 159 | 하동 | 북천 | 직전 | 490-7 | 답 | 106.0 | 5.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160 | 하동 | 북천 | 직전 | 490-6 | 답 | 112.0 | 21.0 | | | 국(국토교통부) | | | | 국유지 |
| | | | | | | | | | | | | | | |
| | | | | 88 | | 158,581 | 38,959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4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범왕마을회 |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010-4665-8360 | 3845-04207 |
| | 주 소 | |
| | 화개면 범왕리 1259 | |

장소

점용 : 화개면 범왕리 산274-2번지(인근 범왕리 산274-11)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416m²

(또는

m³)

목적

콘크리트 포장

기간

(2018. 8. ~ 2023. 8.)

점용 · 사용의 유형

마을회관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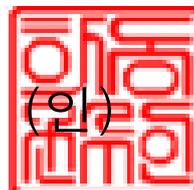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하 동 군 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하동군 고시 제2018-150호

매계 창조적마을 만들기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매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매계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약양면 매계리 매계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매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500백만원(국비 350 도비 45 군비 105)

4. 주요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옛골 둠병정비, 옛골도랑살리기, 매화꽃 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교육, 마을소식지 제작, 마을경영지원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8 (2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6)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8-15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3일

하 동 군



| | | | | |
|-----------------|-------------|-------------------------------|---------------------|----------------------|
| 시행자 (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표자 (성명)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
| 소하천명 | | 내원천 | | |
| 공사(점용·사용)개요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55, 산 102-9 | | |
| | 면적 | 183㎡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0㎡ |
| | 기간 | 2018.9.3.~2023.9.2. | | |
| | 목적 및 사유 | 쌍계사~불교문화 예술관 간 접근로 설치 | | |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055-254-3922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 주 소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 |

장소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산191-3구(연접 산191-5) 257㎡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237-9구(연접 산191-5) 5㎡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926-12천(연접 전695) 278㎡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540㎡ (또는 m³)

목적

홍수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계류의 침식이나 범람 등 수재해를 방지할 목적의 사방사업

기간

2018. 9. ~ 2023. 9.

점용 · 사용의 유형

사방사업(바닥막이, 기슭막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9월 6일

하 동 군 수 (인)

하 천 점 용 (변 경) 허 가 증

(해양수산과) 제2018-02호

| | | | |
|---------|---|------|------|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21 | | |
| 성명(법인명) | 대한민국 하동청실회 회장 김종학 | | |
| 생년월일 | | | |
| 하천명칭 | 섬진강 | 하천등급 | 국가하천 |
| 점용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7외 11필지 (443-5, 443-18, 440-10, 443-10,455,440-9,440-11,440-10,440-12,440-5,) | | |
| 점용면적 | 1,400㎡ | | |
| 최초허가일 | 2018년 09월 07일 | | |
| 점용기간 | 2018. 09. 15.~ 2018. 09. 25. | | |
| 허가조건 |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09월 0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우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52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 김*옥 | 생년월일(성별) 1963.09.03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30903-2***** |
| | 주 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79 | |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산리 973(구) 인근: 화개면 삼산리 338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41 m²

(또는

m³)

목적

창고 진출입로

기간

2018. 9. ~ 2023. 9.

점용·사용의 유형

콘크리트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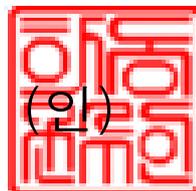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57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 | | |
|-----------|---------------------------|-------------------------------|
| 허가 대상자 | 성 명 류** | 생년월일(성별) 1956.06.20 |
|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60620-1***** |
| | 주 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79 | |

장소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941-49(인근: 옥종면 병천리 849)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 m²

(또는

m³)

목적

농가주택을 위한 전봇대 설치

기간

2018. 9. ~ 2023. 9.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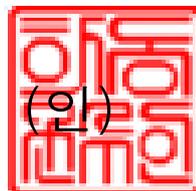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8 - 15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1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1 외 1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17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9.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 명주 소고 시일 | 이동 사유 | 도로 명고 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623-1, 산 125-5, 614, 621, 622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1 | 2018 0913 |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97-10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626-30 | 2018 0913 | | 2009 0702 |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33-1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98-4 | 2018 0913 | | 2007 0618 |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 시설명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82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98-32 | 2018 0913 | | 2007 0618 |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053-7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32 | 2018 0913 | | 2007 0618 |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83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79 | 2018 0913 | | 2009 0702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394-8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16 | 2018 0913 | | 2007 0618 |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여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699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18-8 | 2018 0913 | | 2007 0618 | 동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74-11, 718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맥전길 55-2 | 2018 0913 | | 2007 0618 | 맥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62-3, 63-2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51-17 | 2018 0913 | | 2007 0618 |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산13-11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길 32-21 | 2018 0913 | | 2009 0302 | 불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258-1, 1254-1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155 | 2018 0913 | | 2007 0618 | 배가 닿는 나루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376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아래몰길 24-10 | 2018 0913 | | 2007 0618 | 학동마을의 아래쪽에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180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16-3 | 2018 0913 | | 2007 0618 |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92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87-60 | 2018 0913 | | 2007 0618 | 중도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7-5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47 | 2018 0913 | | 2009 0302 |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 명에 반영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7-5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49 | 2018 0913 | | 2009 0302 |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 명에 반영 | |

하동군 공고 제 2018-970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 지역건설산업에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구매, 중장비 사용권장과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 우대와 편의제공 조항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3조(군수의 책무) 제5항 및 제6항 조문 일부 개정
 -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함.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 우대와 각종 편의 제공 조문 삭제(제5항 관련)
 -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과 지역 건설자재 구매, 중장비 사용 촉진 노력.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 우대와 각종 편의 제공 조문 삭제(제6항 관련)

4. 의견 제출 :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10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880-2502~05, FAX 880-2509, e-mail dirt65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1부.

2.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붙임 2]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생략)</p> <p>⑤ <u>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⑥ <u>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u></p> |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u></p> <p>⑥ <u>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제안 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의 신설, 부서이관, 폐지 및 사무결정의 합리적 조정
3. 주요 내용 : 사무분배의 원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대상사무 조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35hero@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국장·담당관, 과·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소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 가. 기관의 준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다. 국장, 담당관·과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 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소장의 전결사항

-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 나.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
- 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담당의 전결사항

-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전결대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동군 행정(이하 “군정” 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 3.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 하동군의회 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국·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 5. 그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

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사무전결 처리규칙(공통)

(※ 전결 및 결재 ○)

| 소관별 | 세 부 업 무 명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 군수 |
|---------------------|---------------------------------------|-----------|----|------------|----|-----|----|
| | | 담 당 | | 담당관 과소장 | 국장 | 부군수 | |
| | | 담당자 | 담당 | | | | |
| 공통전결사항 | 1. 의회업무 | | | | | | |
| | 가. 군정질문 주요정책에 관한 답변서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 기안 | | | | ○ |
| | 나. 간담회 자료 | 기안 | | ○ | | | |
| | 2. 군수지시사항 | | | | | | |
| | 가.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결과보고 | | 기안 | | | | ○ |
| | 나. 보완 및 추가지시사항 | 기안 | | ○ | | | |
| | 3. 사무인계인수 | | | | | | |
| | 가. 부군수 | | 기안 | | | | ○ |
| | 나. 국장 | 기안 | | | | ○ | |
| | 다. 담당관, 소장(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 | 기안 | | | | ○ | |
| | 라. 과장 | 기안 | | | ○ | | |
| | 마. 6급 이하 | 기안 | | ○ | | | |
| | 4. 소속직원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출장명령 등 처리 | | | | | | |
| | 가. 부군수 | 기안 | | | | | ○ |
| | 나. 국장 | 기안 | | | | ○ | |
| | 다. 담당관, 소장(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 | 기안 | | | | ○ | |
| | 라. 과장 | 기안 | | | ○ | | |
| | 마. 6급 이하 | 기안 | | ○ | | | |
| | 5. 회의소집 및 지시 | | | | | | |
| | 가. 읍면장,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 | 기안 | | | | ○ |
| | 나. 국장 회의 | | 기안 | | | ○ | |
| | 다. 담당관, 과·소장 회의 | 기안 | | | | ○ | |
| | 라. 6급이하 담당자 | 기안 | | ○ | | | |
| | 6.소속직원의근무부서지정 | | 기안 | ○ | | | |
| 7. 개별법령 등에 의한 민원처리 | | | | | | | |
| 가. 시정·건의·질의,정보공개 사항 | 기안 | | ○ | | | | |
| 1) 중요사항 | 기안 | | | ○ | | | |

| | | | | | | |
|------------------------|----|----|---|---|---|---|
| 2) 일반사항 | 기안 | | ○ | | | |
| 나. 제 증명민원발급 | 기안 | | ○ | | | |
|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 기안 | | ○ | | | |
| 8. 비밀문서관리 | | | | | | |
| 가. 1.2급 비밀문서 생산 | | 기안 | | | | ○ |
| 나. 3급 비밀문서 및 자체충무계획 생산 | 기안 | | | | ○ | |
| 다. 대외비문서 생산 | 기안 | | ○ | | | |
| 라. 보안진단 | 기안 | | ○ | | | |
| 마. 비밀기록부 관리 | 기안 | ○ | | | | |
| 10. 공무원 포상 | | | | | | |
| 가. 군수표창 기본방침 | | 기안 | | | | ○ |
| 나. 군수표창대상자 결정 | 기안 | | | | | ○ |
| 다. 정부포상 및 지사 이상 표창추천 | 기안 | | | | | ○ |
| 11. 일반단체 및 지정단체 지원 육성 | 기안 | | ○ | | | |
| 12. 위원회 운영 | | | | | | |
| 가. 군수가 위원장인 경우 | | 기안 | | | | ○ |
| 나. 부군수가 위원장인 경우 | | 기안 | | | ○ | |
| 다. 국장이 위원장인 경우 | 기안 | | | ○ | | |
| 13. 예산집행 품의 | | | | | | |
| 가. 공사 또는 토지 매입 | 기안 | | | | | |
| 1) 추정금액 2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2) 추정금액 2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나. 제조 및 용역 | 기안 | | | | | |
| 1) 추정금액 1억원 초과 | 기안 | | | | | ○ |
|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 | 기안 | | | | ○ | |
| 3)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다. 기타 | 기안 | | | | | |
| 1)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 기안 | | | | | ○ |
|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 | | | | | |
|---------------------------------|----|----|---|---|---|---|
|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 기안 | | ○ | | | |
| 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 기안 | | ○ | | | |
| 14. 공사설계변경 및 변경사유(증감액) | | | | | | |
| 가. 변경 2억원 이상 추가변경시행 | 기안 | | | | | ○ |
| 나. 변경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추가변경시행 | 기안 | | | | ○ | |
| 다. 변경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추가변경시행 | 기안 | | | ○ | | |
| 라. 변경 5,000만원 미만 추가변경시행 | 기안 | | ○ | | | |
| 15. 공사지구선정 및 계획수립 | | 기안 | | | | ○ |
| 16. 공사관리 | | | | | | |
| 가.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또는 교체 | 기안 | ○ | | | | |
| 나. 준공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임명 및 교체 | 기안 | ○ | | | | |
| 다. 공사하자검사원 임명 및 보수명령 | 기안 | | ○ | | | |
| 라. 자재(관급)수불 및 관리 | 기안 | ○ | | | | |
| 마. 공사시험의뢰 | 기안 | ○ | | | | |
| 바. 공유지분할 및 현황측량의뢰 | 기안 | | ○ | | | |
| 사. 공사현장 발생품 처리 | 기안 | ○ | | | | |
| 아. 공사기간 연기검토 및 인·허가 | 기안 | | ○ | | | |
| 자. 공사 착·준공보고 | 기안 | ○ | | | | |
| 차. 공사 하도급 및 현장대리인계 처리 | 기안 | | ○ | | | |
| 카. 사업준공 | 기안 | | ○ | | | |
| 타. 준공결과 보고 | 기안 | | ○ | | | |
| 파. 사업입찰 상황보고 | 기안 | ○ | | | | |
| 하. 사업추진 상황보고 | 기안 | ○ | | | | |
| 17.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 | | | | | |
| 가. 설계내역서 작성 및 검토 | 기안 | ○ | | | | |
| 나.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 의뢰 | 기안 | | ○ | | | |
| 18. 공사설계 승인 신청 | 기안 | | ○ | | | |
| 19.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 | 기안 | | ○ | | |
| 20. 건설공사 설계지침 및 방침결정 | | 기안 | ○ | | | |
| 21. 용역설계 보완지시 | 기안 | | ○ | | | |
| 22. 건설기술 심의요청 | 기안 | | ○ | | | |
| 23. 각종공사 지장물철거 계고장 발부 | 기안 | | ○ | | | |

| | | | | | |
|--------------------------|----|----|---|---|---|
| 24. 감독일지 작성 및 인원점검 | 기안 | ○ | | | |
| 25. 공사하도급 및 현장대리인 타당성 검토 | 기안 | | ○ | | |
| 26. 기성부문 검사 | 기안 | | ○ | | |
| 27. 공사의 중지와 해제 통보 | 기안 | ○ | | | |
| 28. 공사보완 및 재시공 지시 | 기안 | ○ | | | |
| 29. 현장대리인 및 종사자 교체 요청 | 기안 | ○ | | | |
| 30. 잉여 관급자재 처리 | 기안 | ○ | | | |
| 31. 공사구간내 지장물건 이전, 제거 요청 | 기안 | ○ | | | |
| 32. 공사관리 시험 | ○ | | | | |
| 33. 공사장내 반입된 불량자재 반출조치 | ○ | | | | |
| 34. 공사재료 선정의뢰 시험 | 기안 | ○ | | | |
| 35. 불성실 시공업체 제재 조치 | | 기안 | ○ | | |
| 36. 공사구간내 농지전용 협의 | 기안 | | ○ | | |
| 37. 공사구간내 산림훼손 협의 | 기안 | | ○ | | |
| 38. 공사구간내 도시계획개발 행위 협의 | 기안 | | ○ | | |
| 39. 준공검사 | | | | | |
| 가. 5억이상공사 준공검사 | | 기안 | | ○ | |
| 나. 3억이상 5억미만공사 준공검사 | 기안 | | | ○ | |
| 다. 3억미만 준공검사 | 기안 | | ○ | | |
| 40. 자치법규 제·개정 | | | | | |
| 가. 조례, 규칙, 훈령 제·개정 방침 | | 기안 | | | ○ |
| 나. 조례, 규칙, 훈령 심사의뢰 | 기안 | | ○ | | |
| 다. 조례, 규칙, 훈령 심의회 개최 의뢰 | 기안 | | ○ | | |
| 41.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매월 사역결의 | 기안 | | ○ | | |
| 42. 국회,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 기안 | | ○ | | |
| 43. 각종 점사용허가 기간연장 | 기안 | | ○ | | |
| 44.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심사 | 기안 | | ○ | | |
| 45. 소속 직원의 경미한 복명서 관리 | 기안 | | ○ | | |
| 46. 차량배차신청 | 기안 | | ○ | | |
| 47.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 기안 | | ○ | | |
| 48.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가. 법정사항이외 보조금 신청 | 기안 | | | ○ | |
| 나. 법정 보조금 신청 | 기안 | | ○ | | |

| | | | | | | |
|--------------------------|----|---|---|---|--|---|
| 다. 보조금 결정과 취소 | 기안 | | | ○ | | |
| 라. 정산보고 | 기안 | | ○ | | | |
| 49.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 기안 | ○ | | | | |
| 50. 수리치 않은 문서의 이송 또는 수발 | 기안 | ○ | | | | |
| 51. 각종 공부의 열람 이용 | 기안 | ○ | | | | |
| 52. 개별 법령등에 의한 제증명 민원 발급 | ○ | | | | | |
| 53. 각종 작업근무일지 및 대장처리 | 기안 | ○ | | | | |
| 54. 내.외 접수문서 처리 | | | | | | |
| 가. 각종 정책 및 예산관련 문서 | 기안 | | | | | ○ |
| 나. 일반지시, 강조 관련 문서 | 기안 | ○ | | | |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 예정부서 |
|---------|------------|----|------|---------|
| 식품가공전문가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1명 | 2년 | 농산물유통과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
| 식품가공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가공 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창업코칭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 시제품 제조 실습 - 가공 자문, 상담, 마케팅, 홍보 지원 - 주요 기자재 관리 및 유지 보수로 시설 운영 정상화 - 식품 원자재, 식품 첨가물 등 주요 자재 관리 ○ 농식품 가공품 개발 : 새로운 제품 연구 및 개발 ○ 제품 허가 및 HACCP 인증 유지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자 격 기 준 |
|-------------|-----------------|---|
| 식품가공 전문가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사 자격증(기술사 포함) 소지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전공 및 경력분야: 식품관련 학과 및 경력

※ 식품업체 근무 경력, 식품 관련 석사 학위 이상급 소지자우대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 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
| 임기제 8급 | 51,705천 원 | 36,882천 원 | 8급(상당) |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
| '18. 8. 31(금) | '18. 8. 31 ~ '18. 9. 10 | 서류전형 | - | '18. 9. 11 |
| | | 면접시험 | '18. 9. 13 | '18. 9. 14 |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8. 31~ 09. 10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산물유통과(☎ 055-880-6562)

<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동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 | | | |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 ()급상당 | | (한자) | |
|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
| 주소 | (-) | | 하동군 수입증지 7급(7,000원) 8급(5,000원) | |
| 전자우편 | | 복수국적 | | |
| 전화 | | 휴대전화 | | |

| | | | |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일반임기제채용시험) | | |
|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 ()급상당 | 성명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주민등록 번호 | | - | | |
|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④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
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경력(재직) 증명서

| | | | | | | |
|-------|---------------|------------|------------|-------------------------|------|------------|
| 인적 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경력 사항 | 재 직 기 간 |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운행차량 | 상근 또는 상근아님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 | |
|-----|---|
| 발급자 | |
| 소속 | |
| 직위 | |
| 성명 | 인 |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8.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 **2018년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8급상당) 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868호에 의거 시행한 2018년 제3회 하동군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 분 야 | 임용등급 |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
|-----|---------------|------------------|
| 속기 | 지방일반임기제(8급상당) | 2018-3-3 |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가. 등록일시 : 2018. 9. 6(목) 09:00~18:00까지
- 나. 등록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055-880-2153
- 다. 제출방법 : 아래 제3항의 제출서류를 본인이 직접 등록

3. 제출서류

-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3×4 사진부착) 1통
- 나.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이 기록된 것)
-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 라. 최종 학력증명서 1통
-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사.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3통
- 아. 사진 3매(명함판 상반신 탈모, 5*7 2매, 3*4 2매)
- 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유의사항

- 가. 임용후보자 등록 시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나.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다.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청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식 4종(임용후보자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하동군 공고 제2018-943호

2018년도 하동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공고

하동군에서는 2018년도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하 동 군 수

1.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개요

□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 : 5 대

□ 접수기간 : 2018. 9. 10.(월) ~ 2018. 9. 21.(금)

□ 보급차종 : 붙임 1 참조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2.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 구입비 보조 기준 : 보급대수 제한 없음

- 기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추가 구매 가능

□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

-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 최대 18백만원(국비 최대 12, 지방비 6) 차종별 차등 지원

※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

①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② 교 육 세 : 최대 9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③ 취 득 세 : 최대 2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3.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

- 2018년도 하동군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신청일 전일까지
 - ①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주민 ②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③ 하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등기부등본(지사, 대리점, 공장 등)을 통한 소재지 확인

□ 신청자격 (필수조건)

- ① 전기차 제작·판매업체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계약서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③ 하동군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 등록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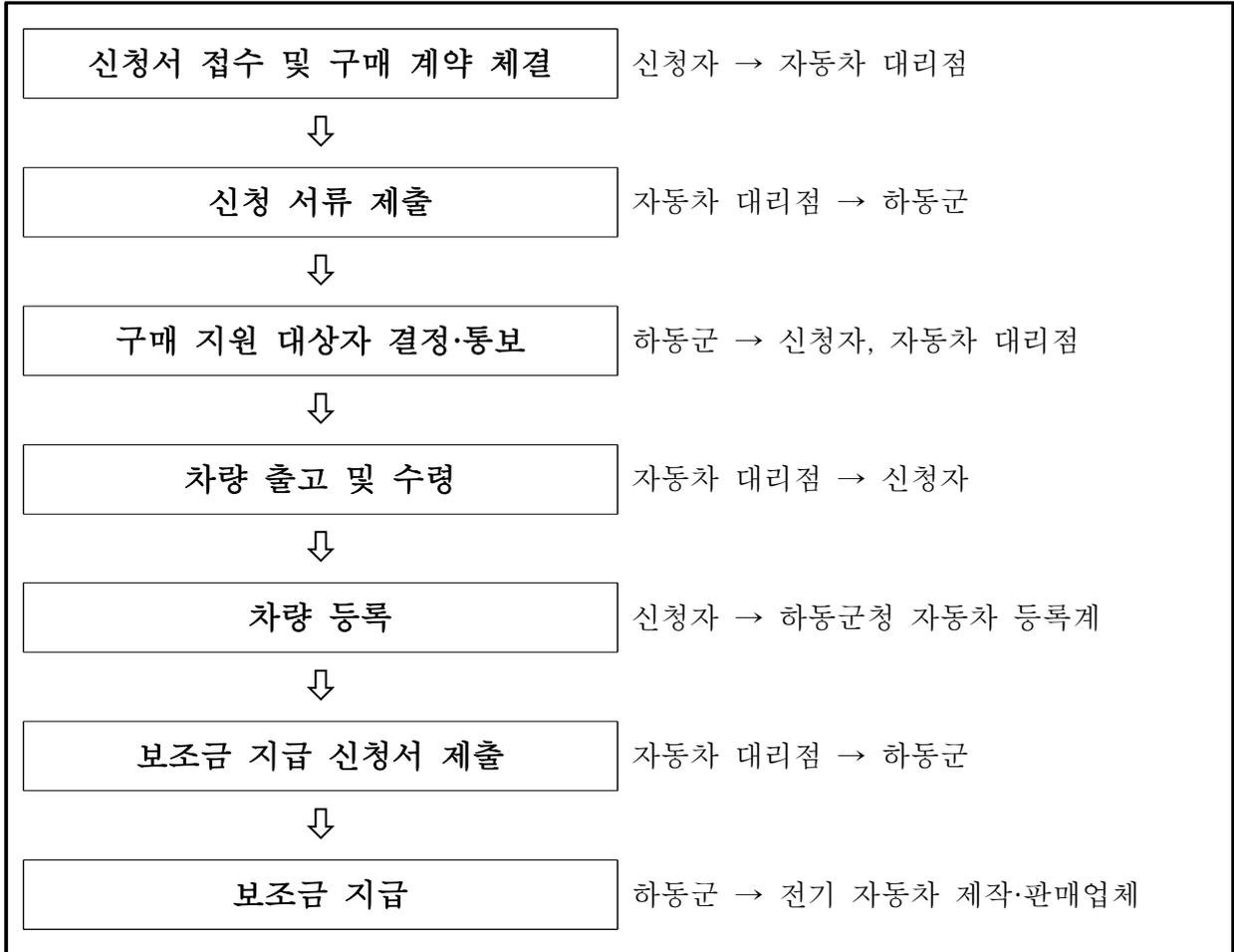
- ① 개 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원 공동명의 등록 시),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②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 전기차 판매점 :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방법

- 전기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하동군청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 담당자 이메일(myday8@korea.kr)로 발송 접수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신청자가 5명 초과일 경우 : 추첨에 의한 일괄 선정
 - 신청자가 5명 이하일 경우 : 접수순 선정
- 추첨 일시 및 장소 : 2018. 10. 1.(월) 14:00, 하동군청 소회의실
- 추첨방식 : 공개(희망자 누구나 참관 가능)
- 기타
 - 추첨 후 전기 자동차 제작·판매업체에 결과 개별 통보



4. 특이사항

- 신청서류를 접수한 이후 차종, 연식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 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전기를 1개월 이내 신청자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지원은 취소됩니다.

5.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
|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887 ~8 |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 032-590-3693 |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55-880-2564 |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 붙 임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 2. 전기 자동차 구매 신청서

[붙임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 제조·판매사 | 차 종 | 주행거리(km) | | 배터리용량(kwh) |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
|--------|----------------------|-------------|----------|------------|--------------|
| | | 상온(20~30°C) | 저온(-7°C) | | |
| 현대 |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 191.2 | 154.5 | 28.08 | 1,727 |
| | 아이오닉 EV ('17) I트림 | 191.2 | 147 | 28.08 | 1,719 |
| | 코나(기본형) | 405.6 | 310.2 | 64.06 | 1,800 |
| | 코나(경제형) | 254.2 | 188.4 | 39.24 | 1,800 |
| | 아이오닉(18, HP) | 200.1 | 161 | 28.08 | 1,726 |
| | 아이오닉(18,PTC) | 200.1 | 154.2 | 28.08 | 1,719 |
| 기아 | SOUL EV ('18) | 179.6 | 154.2 | 30.00 | 1,644 |
| | RAY EV | 91 | 69.3 | 16.40 | 1,306 |
| | 니로EV(HP) | 385 | 348.5 | 64.06 | 1,800 |
| | 니로EV(PTC) | 385 | 303 | 64.06 | 1,800 |
| 르노삼성 | SM3 Z.E ('18) | 212.7 | 123.2 | 35.94 | 1,617 |
| | SM3 Z.E ('17) | 135 | 83.5 | 26.64 | 1,439 |
| BMW | i3 94ah ('18) | 208.2 | 122.5 | 33.18 | 1,691 |
| | i3 ('17) | 132 | 75.5 | 18.80 | 1,407 |
| GM | 볼트 EV | 383.2 | 266.3 | 60.9 | 1,800 |
| 테슬라 | 모델S 75D | 359.5 | 284.7 | 87.5 | 1,800 |
| | 모델S 90D | 378.5 | 295.7 | 87.5 | 1,800 |
| | 모델S 100D | 451.2 | 369 | 101.5 | 1,800 |
| 닛산 | LEAF | 132.8 | 85.5 | 23.76 | 1,449 |

※ 차량별 성능, 판매가격, 할인 유무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대리점과 협의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안내

□ 대상직렬·직급 및 인원

- 행정 8급~9급 : ○명
- 시설(토목) 8급~9급 : ○명

□ 자격 및 조건

- 전입대상 직렬·직급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방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
 -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 품행이 바르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 제외대상자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자
-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속기관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9월 부터 결원보충 시 까지
- 제출서류 : 전입희망 신청서(붙임1), 일방전출 동의 확인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인사기록카드 사본
- 제출방법 : E-mail(hae4444@korea.kr) 제출

※ e-mail 접수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고(PDF 파일 등) 유선연락,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면접 당일 원본 제출 요망

○ 문 의 : 하동군 행정과 인사담당자(055-880-2153)

□ 선발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심사

- 제외대상 사유 검토 등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결정

○ 2차 심사 : 면접심사

-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및 면접 후 최종 전입대상자 선발 시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허위 기재, 기재착오, 누락 등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 일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입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입 시기는 인사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전입희망 신청서

| | | | | | |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진 (파일첨부) |
| | 현 주 소 | | | | |
| 소 속 | 부 서 명 | 직 급 | 최초임용일 | 현직급일 (근무연수) | |
| | | | | | |
| 경력사항 | 부 터 | 까 지 | 근무지 등 | | |
| | | | | | |
| | | | | | |
| 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교명 및 학과 등 | | |
| | | | | | |
| | | | | | |
| 연 락 처 | 자 택 | | 행정전화 | | 휴대전화 |
| 인사담당자 | 성 명 | | 행정전화 | | 휴대전화 |

자 기 소 개 란

■ 전입희망 사유

■ 기타 자기소개 내용

《 작 성 요 령 》

- 전입희망 사유와 본인의 장단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 기타 공직생활에서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정도로 하고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하동군 공고 제 2018 - 955호

지적재조사 상신흥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군 악양면 상신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499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5.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상신흥지구」 실시계획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 055-880-2083

다. 팩 스 : 055-880-2078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①사업명 | | | | |
| ②사업위치 | | | | |
| ③사업시행자 | | | | |
| ④의견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⑤의견내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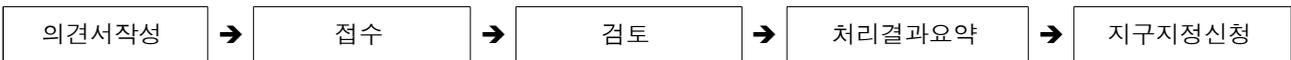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처 리 절 차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동군 공고 제 2018 - 956호

지적재조사 청수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군 옥종면 청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7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5.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가. 관계서류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청수지구」 실시계획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 나. 전 화 : 055-880-2083
- 다. 팩 스 : 055-880-2078
-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①사업명 | | | | |
| ②사업위치 | | | | |
| ③사업시행자 | | | | |
| ④의견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⑤의견내용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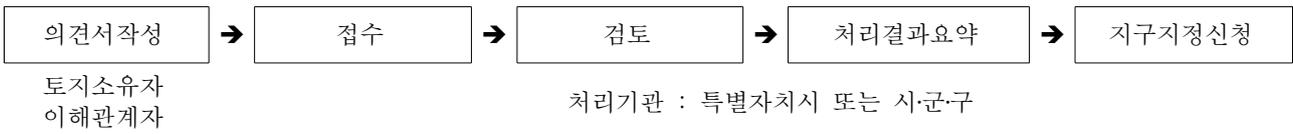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 2018년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8급상당) 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922호에 의거 시행한 2018년 제4회 하동군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 분 야 | 임용등급 |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
|------|---------------|------------------|
| 식품가공 | 지방일반임기제(8급상당) | 합격자 없음 |